

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-2판 개정전후대비표

〈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·환자지침관리팀〉

쪽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[Part 1.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]			
8, 24	신설	<p>※ 먹는치료제 처방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(먹는치료제 복용 의사 사전 확인시)</p> <p>① 증상시작일 : 증상발생후 5일 이내 투여 가능, 무증상자는 투여대상 아님</p> <p>② 이전 확진이력 여부 및 날짜, 먹는치료제 투여 이력 - 재감염/재검출 사례 판단 - 이전 라게브리오 투여자 대상 파스로비드 투여 제한 여부 확인 가능</p>	- 설명 추가
17, 31	** 단, 배송지 관리를 위하여 기관 변경사항(신규, 변경)발생시 보건소→ 시도 (엑셀양식) → 유한양행(covid19@yuhan.co.kr/질병관리청)으로 공유	** 기관등록 이후 조제기관에서 세부정보(배송지, 담당자, 연락처) 수정 가능. 단, 배송지 관리를 위하여 기관 변경사항(신규, 변경)발생시 보건소 → 시도 (엑셀양식) → 유한양행(covid19@yuhan.co.kr/질병관리청)으로 공유	- 설명 추가
18, 32	<p>-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</p> <p>- 지자체(시군구)에서는 상시 재고 보유 기준(1주일 사용량)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중앙 조정</p> <p>※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 기관별 협조사항 - (조제기관) 의료기관은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 - (보건소) 수요신청 전 수요신청량 자체 검토 및 조정하여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 - (질병청) 수요신청 물량 재 검토 및 과다 물량 신청 기관의 경우 조정 실시</p> <p>(3) (약품공급) '치료제관리'에서 당일 10시 이전까지 직접 수요요청 (보건소, 의료기관) → 질병청(유한양행) 공급량(결정량) 입력 후 익일 17시까지 공급(금요일, 주말, 공휴일 제외)</p> <p>* 공급 결정량이 입력(당일 10시부터)된 이후 수요량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물량으로 미반영 될 수 있으며, 결정량 입력·확정이 16시까지 미반영시 유한양행(☎043-240-1357) 별도 문의 필요</p>	<p>-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</p> <p>- 지자체(시군구)에서는 상시 재고 보유 기준(1주일 사용량)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중앙 조정</p> <p>※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 기관별 협조사항 - (조제기관) 의료기관은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 - (보건소) 수요신청 전 수요신청량 자체 검토 및 조정하여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 - (질병청) 수요신청 물량 재 검토 및 과다 물량 신청 기관의 경우 조정 실시</p> <p>(3) (약품공급) '치료제관리'에서 매주 월요일까지 직접 수요요청(보건소, 의료기관) → 질병청(유한양행) 공급량(결정량) 입력(화요일) 후 금요일 까지 공급(주말, 공휴일 제외)</p> <p>* 공급 결정량이 입력(화요일)된 이후 수요량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물량으로 미반영 될 수 있으며, 결정량 입력·확정이 16시까지 미반영시 유한양행(☎043-240-1357) 별도 문의 필요</p>	- 신청 주기 추가 - 신청 주기 및 일정 변경

쪽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19, 33	<p>③ (요청물량) 각 기관별 1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서만 신청*</p> <p>* 재고관리시스템 '수요량' 탭 옆 '비고'란에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(예시) 10명분(지난 1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)*7일 = 70명분</p> <p>* 보건소 담당약국 수요요청시 위 기준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질병청(유한양행)에서 공급물량을 삭감할 수 있음</p> <p>④ (공급절차) 평일(금 제외) 10시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요청 → 질병청(유한양행) 검토 후 결정량 입력* 및 확정 → 익일(주말, 공휴일 제외) 17시까지 공급</p> <p>* 공급 결정량 입력·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, 당일 문의 자체 및 익일에도 미입력시 유한양행(☎043-240-1357) 문의</p> <p>※ 도서산간·벽지 소재 기관은 공급에 1~2일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필요</p>	<p>③ (요청물량) 각 기관별 1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신청*</p> <p>* 재고관리시스템 '수요량' 탭 옆 '비고'란에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(예시) 10명분(지난 1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)*7일 = 70명분</p> <p>* 보건소 담당약국 수요요청시 위 기준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질병청(유한양행)에서 공급물량을 삭감할 수 있음</p> <p>④ (공급절차) 매주 월요일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요청 → 질병청(유한양행) 검토 후 결정량 입력* 및 확정(화요일) → 금요일(주말, 공휴일 제외) 17시까지 공급</p> <p>* 공급 결정량 입력·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, 당일 문의 자체 및 화요일까지 미입력시 유한양행(☎043-240-1357) 문의</p> <p>※ 도서산간·벽지 소재 기관은 공급에 1~2일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음</p>	- 신청주기 및 일정 변경
20, 34	<p>(2) (재고관리)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</p> <p>- 지자체(시군구)에서는 상시 재고 보유 기준(1주일 사용량)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중앙 조정</p> <p>- 지자체(시도, 시군구)는 ①적정 재고량을 넘어서는 물량 보유, ②유효 기간 관리 필요 등을 고려하여, 관할 기관내 전배를 적극적으로 시행</p> <p>※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 기관별 협조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조제기관) 의료기관은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 - (보건소) 수요신청 전 수요신청량 자체 검토 및 조정하여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 - (질병청) 수요신청 물량 재 검토 및 과다 물량 신청 기관의 경우 조정 실시 	<p>(2) (재고관리)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</p> <p>- 지자체(시군구)에서는 상시 재고 보유 기준(1주일 사용량)을 고려하여 자체 검토 후 수요신청하여야 하며, 과다 신청시 중앙 조정</p> <p>- 지자체(시도, 시군구)는 ①적정 재고량을 넘어서는 물량 보유, ②유효 기간 관리 필요 등을 고려하여, 관할 기관내 전배를 적극적으로 시행</p> <p>※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 기관별 협조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조제기관) 의료기관은 최근 사용량 기준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 - (보건소) 수요신청 전 수요신청량 자체 검토 및 조정하여,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신청 - (질병청) 수요신청 물량 재 검토 및 과다 물량 신청 기관의 경우 조정 실시 	- 신청 주기 추가
[Part 2.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]			
37	<p>1 시스템 사용안내</p> <p>- 먹는치료제(팍스로비드, 라게브리오) 재고관리 시스템(http://covid19kdagkr) 운영</p> <p>☞ (기관 등록, 신청, 변경) 보건소, 시도 ☞ 먹는 치료제 기관관리 부서</p> <p>☞ (시스템 문의)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☎ 043-719-9160, 9153, 9152</p>	<p>1 시스템 사용안내</p> <p>- 먹는치료제(팍스로비드, 라게브리오) 재고관리 시스템(http://covid19kdagkr) 운영</p> <p>☞ (기관 등록, 신청, 변경) 보건소, 시도 ☞ 먹는 치료제 기관관리 부서</p> <p>☞ (시스템 문의)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☎ 043-719-9160, 9152</p> <p>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 ☎ 043-719-7064</p>	- 전화번호 변경
38	<p>- 수요량은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간 필요 물량에 대해 수요신청 → 비고란에 반드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공급 가능</p>	<p>- 수요량은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간 필요 물량에 대해 주 1회(매주 월요일까지) 수요신청* → 비고란에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공급 가능</p> <p>* 원내공급 의료기관은 직접 수요량 입력, 조제기관(담당약국)은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신청받아 수요량 입력</p>	- 신청 주기 및 상세 설명 추가

쪽	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39	<p>③ 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전매(약국·의료기관)</p> <p>- (약품전매) ①전매시에는 실제 약품 전매와 재고관리시스템 수정 입력*까지 반드시 확인하고(시도, 보건소), ②기관 운영 중단 시에는 전매 조치와 시스템 입력 확인 후, 기관 등록 취소 요청(시도 → 방대본/유한양행)</p>	<p>③ 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전매(약국·의료기관)</p> <p>- (약품전매) ①전매시에는 실제 약품 전매와 재고관리시스템 수정 입력*까지 반드시 확인하고(시도, 보건소), ②기관 운영 중단 시에는 전매 조치와 시스템 입력 확인 후, 기관 등록 취소 요청(약국/의료기관 → 보건소)</p>	<p>- 기관 수정</p>